

중동전쟁 상황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및 제도 안내

김해고용센터 기업지원팀

1. 개요

□ 중동전쟁 상황으로 인한 원유 수급 차질 등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고용 충격이 우려됨에 따라, 우리 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

-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서 지원대상 해당
-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적극 인정

2. 지원대상 ※ 매출 감소 요건 미충족 시에도 지원 대상 해당됨

① 원유 수급 차질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의 사업주

- 석유 정제품 제조업(C.192), ·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C.20, 의약품 제외)
- ※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일 현재 본사 사업장의 고용보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

② 물류 애로 겪는 중동 수출 사업주

- 중기부 「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」 선정 기업
- 산업부 「글로벌 진출역량강화 긴급지원 바우처 2차」 선정 기업

③ 급격한 원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사업주

-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C.22), · 항공 운송업(H.51)
- ※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일 현재 본사 사업장의 고용보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

④ 특정 업종 거래 사업주

- 업종(항공운송업, 고무·플라스틱 제조업, 석유정제품 제조업, 화학제품 제조업)에 해당하는 사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0% 사업주

⑤ 급격한 제조단가 상승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사업주

- 섬유제조업(C.13)
- ※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일 현재 본사 사업장의 고용보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

3. 적용 시점

- ①②(기존)(2026. 4. 13. 이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건부터 적용)
- ③④(추가)(2026. 5. 6. 이후 고용유지 계획 신고 건부터 적용)
- ⑤(추가)(2026. 6. 26. 이후 고용유지 계획 신고 건부터 적용)

참고

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개요

❖ 2026. 6. 26.부터 **섬유제조업*** 기업은 **매출액 요건****을 충족하지 않더라도, **지원대상으로 인정**하고 있습니다. (다만, 고용조정제한 등 그 외 요건 준수 필요)

*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일 현재 본사 사업장의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C.13인 기업

**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%이상 감소 또는 직전 2분기 월평균 매출액 계속 감소

□ **(개요)** 일시적 경영난으로 **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***가 휴업 등 **고용유지조치시 지원금을 지급**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

*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% 이상 감소 등

□ **(지원대상)** 고용유지조치 및 이후 1개월까지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 이행,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**신규채용 제한*** 등

* 단, 법령기준 충족을 위한 채용 등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

구분	실시 요건	지급하여야 하는 금품 수준
유급	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% 이상 단축	고용유지조치 기간 평균임금 70% 이상 의 금품 지급
무급	①사전 노동위원회 승인, ②30일 이상 실시, ③실시비율: ▲50% 이상 (5명~19명), ▲10명 이상 (20명~99명), ▲10% 이상 (100명~999명), ▲100명 이상 (1,000명 이상)	고용유지조치 기간 평균임금 50% 미만 의 금품 지급 (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포함)

□ **(지원내용)**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

* 단, 무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50% 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

구분	유급 고용유지조치 (사업주 지원)		무급 고용유지조치 (근로자 지원)	
	지원수준 (사업주 지급금품 기준)	지원한도(기간)	지원수준	지원한도(기간)
일반업종	· 우선지원 2/3 · 대규모 1/2 또는 2/3* * 단축률 50%이상	· 1일 68,100원 (연 180일)	· 평균 임금의 50% 범위내 에서 결정	· 1일 68,100원 (재직기간 중 최대 180일)
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	· 우선지원 8/10 · 대규모 6/10 또는 7/10* * 단축률 50%이상	· 1일 68,100원 (연 180일)		

*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: 광주 광산구, 전남 여수시, 경북 포항시, 충남 서산시, 울산 남구, 전남 광양시, 인천 동구

□ **(지원절차)** 고용24 누리집(work24.go.kr) - 기업회원 - 고용유지에서 신청 가능

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	→	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여부 결정 (무급만 해당)	→	고용유지조치 실시 (고용조정제한의무준수)	→	지원금 신청 (매월)	→	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
사업주 → 고용센터		고용센터		사업주		사업주 → 고용센터		고용센터 → 사업주 또는 근로자

□ **(문의)** 본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(대표번호 ☎ 1350)